

삼육대학교 학칙 전면 개정(안) 공고

삼육대학교 학칙 제8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삼육대학교 학칙 전면 개정(안)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**2020.12.16.(수)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개정사유: 교육환경의 변화와 고등교육법, 사립학교법 등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하며, 법적 체계 및 학칙 구성에 부적절하거나 의미가 모호한 부분들을 재정비하여 효과적인 규칙의 활용을 위해 학칙 전면 개정 필요

2. 주요 개정 내용

① 학칙 전면 개정에 따라 장과 조는 아래와 같음

구분	변경전		변경후	
	장	조	장	조
구성	23장	91조	7장	80조

② 학칙 전면 개정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음

- 학칙의 목적 규정
- 학칙의 정의와 체계
- 행정조직의 체계
- 각종 회의체 구성 및 체계 등

3. 학칙 개정(안) : 붙임

- ① 학칙 전면 개정(안) 전문 1부.
- ② 구학칙 전문 1부.

4.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: 붙임

5. 회신

- ① 회신기한 : 2020년 12월 16일(수)
- ② 회신방법 : e-mail(prof_data@syu.ac.kr)
- ③ 문 의 : 교무처(02-3399-3357)

2020. 12. 09.

삼육대학교 총장